



낚시어선업법 제정 해설

손 영 대/수산청 조선사무관

〈제정 배경〉

국민의 레저 욕구 증대로 주말 또는 피서철에 어선을 이용한 바다 낚시가 일반화 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제도가 없어 안전관리 미흡한 실정에 있어 '91. 7월 국무총리실(제3행정조정실)은 "하절기유도선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어선의 낚시배 대선에 관한 제도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되어 우리청은 '92. 4월 내무부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어선의 유선행위를 반영토록 협의 하였으나 어한기중 부업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어선의 유선 행위는 전업적으로 운영되는 유선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감독관청의 중복, 적용법규의 이원화등으로 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법 제정시까지 행정지도 차원에서 '92. 7월 "유어어선자율운영지침"을 시달하여 어선의 유어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낚시객의 안전성 확보와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94. 4월 제40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선의 유선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확정됨에 따라 '94. 9. 6 가칭 "낚시객의 어선이용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으며 '94. 9-'95. 6월까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신고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쳤으며 '95. 8. 18

경제장관회의 의결, '95. 10. 10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신고의 유효기간을 당해연도로 하고 법률명칭도 "낚시어선업법"으로 하여 '95. 12. 29 법률 제5078호로 제정공포 하였으며 이법의 시행을 위한 낚시어선업법시행령은 '96. 6. 29일자로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은 '96. 7. 9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법 주요골자〉

첫째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낚시객을 낚시어

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도록 하는 영업으로 하였고

둘째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유효기간은 당해연도로 하였으며

셋째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넷째 영업구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되 하천·호수등의 수설보전등을 위한 지역은 영업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낚시어선의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어선법에 의거 어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검사를 받도록 하고 어선검사에 관한여는 어선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일곱째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 및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출입항보고 등을 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시·도지사는 낚시어선의 인명안전 설비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였고

아홉째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등의 명령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열째 낚시어선업자는 선원 및 승객 피해시의 보상여건 마련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주요골자〉

첫째 낚시어선의 규모를 어업허가가 있는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하고 선령은 선령 20년(목선15년)이하의 동력어선으로 하였고

둘째 인명구조용 장비 비치기준을 구명부환, 구명동의는 유선및 도선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하되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와 구명줄, 소화기, 구급약품을 비

치도록 하였고

셋째 낚시어선중 출입항신고 대상은 해면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와 내수면에서 군사보호구역 등 특수구역에서 낚시항행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토록 하였고

넷째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낚시어선업 개시전까지 교육을 필하도록 하고, 3년이상 무사고시는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토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운항교육의 과목·시간등을 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해경, 수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째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사고시 피해보전을 위하여 어선검사증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가입대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도록 규정하고 피해보전 금액은 승객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토록 하였고

〈시행규칙 주요골자〉

첫째 어선의 명칭, 총톤수, 승선인원 등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를 정하였고

둘째 낚시어선의 신고기관, 신고절차는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준용하되 출입항신고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실정을 감안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였고

셋째 안전운항교육과목을 인명구조용장비 사용법 및 응급처치방법 등 인명구조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안전운항교육시간은 년1회 4시간 이내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2년여에 걸친 낚시어선업법령의 제정으로 낚시객의 안전확보는 물론 낚시어선업의 활성화로 어촌관광활성화와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